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 (APT)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문의 : 055-223-1250

※ 본 안내문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 해주시기 바랍니다.

※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 견본주택 운영사항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기관별 추천기준에 따른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 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단,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만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하며, 방문접수시에는 자격입증 서류 및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 공급개요 및 일정 안내

■ **공급위치 : 경산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83-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1,250세대(일반 738세대) / 지하2층 ~ 지상33층 12개동**

■ **공급개요**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공급세대수	입주 시기 (예정)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포함)	계약 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 주택	59A	59.8844	26.0832	85.9676	38.9717	124.9393	**221**	29.02
	59B	59.8891	26.1042	85.9933	38.9747	124.9680	**27**	
	72A	72.7669	24.1127	96.8796	47.3554	144.2350	**253**	
	72B	72.4631	23.8971	96.3602	47.1577	143.5179	**114**	
	84A	84.6653	30.0047	114.6700	55.0922	169.7688	**27**	
	84B	84.6222	29.9553	114.5775	55.0707	169.6482	**96**	
합계							**738**	

※ 상기 공급개요는 입주자모집공고 분양승인시 당시 제반 사항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전용 85㎡이하 주택건설량 10% 범위)** [단위 : 세대]

구분			59A	59B	72A	72B	84A	84B	합계
기관 추천 특별 공급	장애인	창원시	5	1	4	1	1	3	**15**
		경상남도	2	-	2	1	-	1	**6**
		부산광역시	1	-	1	1	-	-	**3**
		울산광역시	1	-	1	2	-	-	**4**
		소계	**9**	**1**	**8**	**5**	**1**	**4**	**28**
	국가유공자 등		1	-	5	1	1	1	**9**
	장기복무 제대 군인		1	-	2	1	-	1	**5**
	10년 이상 복무 군인		1	-	2	1	-	1	**5**
	중소기업 근로자		10	1	8	3	1	3	**26**
합계			**22**	**2**	**25**	**11**	**3**	**10**	**73**

※ 기관추천을 포함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당첨자 비율은 500%로 산정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ex : 59A타입 창원시장애인 전형의 경우 예비당첨자는 최대 25명입니다.)

Ⅱ 공급일정 안내 [예정]

구분	일정 (예정)	비고
입주자 모집공고(예정)	2026년 04월 30일(목)	* 일간신문 및 당사홈페이지(WWW.메트로시티자산데시앙.COM)
견본주택 OPEN(예정)	2026년 05월 08일(금)	* 견본주택 위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83-2번지 일원 ※ 견본주택 OPEN 및 관람 사항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 바랍니다. * 문의 : 055-223-1250
특별공급 청약(예정)	2026년 05월 11일(월)	* 인터넷 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09:00~17:30)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하나 가급적 인터넷 신청을 권함. * 견본주택 신청 시(10:00~13:00), 자격입증 서류 지참 필수
당첨자 동·호수 및 예비입주자 발표(예정)	2026년 05월 19일(화)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 개별조회

※ 상기 일정은 인·허가 및 업무 추진 중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신청 전 당사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여부를 확인 후 한국감정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로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시 구비서류는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Ⅲ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 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 주체에 통보한 자를 대상으로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등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인 2026년 04월 30일(목) 입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수행합니다.
※ 해당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공급하고, 이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 모두를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table>
<tr><td>검색
대상</td><td>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td></tr>
<tr><td>주택의
범위</td><td>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td></tr>
<tr><td>주택
처분
기준일</td><td>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td></tr>
<tr><td>주택을
소유하지
않은것으로
보는경우</td><td>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table>
<tr><th>조항</th><th>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h><th>주거전용면적</th><th>수도권</th><th>비수도권</th></tr>
<tr><td>제53조 제9호가목</td><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td>60㎡ 이하</td><td>1억 6천만원</td><td>1억원</td></tr>
<tr><td rowspan="3">제53조 제9호나목</td><td>단독주택</td><td rowspan="3">85㎡ 이하</td><td rowspan="3">5억원</td><td rowspan="3">3억원</td></tr>
<tr><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tr>
<tr><td>도시형 생활주택</td></tr>
</table>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td></tr>
</table>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Ⅳ 유의사항 안내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집공고일 전 해당기관에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등) 청약 신청은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한 경우로서 부부가 각각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한다. 이 경우 청약 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한 당첨으로 합니다.
■ 첨부되는 제출서류가 허위서류로 판명될 경우 청약 당첨 후에 계약을 하여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되며,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04.30.(목) 예정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 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공급금액,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6.04.30.(목) 공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 등은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 대표번호 및 홈페이지 안내서류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2025.10.3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Ⅴ 참고자료

위치도



경산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83-2번지 일원

견본주택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317-1

※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은 현재 주말 분양사업설명회를 사전예약제로 운영중에 있으며 사전예약은 유선으로 가능 합니다.
※ 견본주택 관람 및 운영방법은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WWW.메트로시티자산데시앙.COM
※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 055)223-125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